

간병범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ursing crime

이 철 호
남부대학교

Lee cheol-ho
Nambu Univ

요약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the proportion was 65 years of age or older population is 7% more than in the total population aged society. Due to the rapid decrease fertility and medical technologies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has emerged as an aging society. In the case of our country, and in 2011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11.4%, the future is even faster aging rate is expected to launch in 2026, the super aged society. The days went by relying on caring for personal piety. Nursing crime is often due to the patriarchal family culture and afford. To care for patients with severe human or plant in the home, not to assume that society. Expanding the scope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person and the family burden reduced through measures to apply for health insurance, nursing care can prevent crime.

I. 서언

유엔의 규정에 따른 분류로,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高齡化社會, Aging Society)라고 한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 기술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1.4%이며,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저축·투자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연금은 물론 노인 빈곤과 질병, 소외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늘어 국가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는 현상도 해결 과제다(경향신문, 2015년 3월 21일, 27면).

고령화 시대에 간병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간병범죄도 마찬가지로 예외일 수 없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다. 간병(看病)을 개인의 효심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속담(俗談)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간병과 관련하여 불효를 넘어 범죄화되고 있다.

본고는 신종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간병범죄'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이다.

II. 간병범죄의 내용

1. 간병범죄의 의의

가족범죄는 신종범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범죄란 가족구성원 등을 상대로 한 폭력 및 살인 등의 사건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간병범죄는 가족범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간병범죄는 좁게는 식물인간이나 중증 환자를 오랫동안 가정에서 돌보는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고통 등 피로에 지쳐 부모나 배우자인 환자를 살해하고 동반자살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정의할 수 있다. 넓게는 부모나 배우자를 간병하다 오랜 간병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병자살까지 포함할 수 있다.

2. 간병으로 인한 가정 내 살인

간병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연간 몇 건 발생하는지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연간 40-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간병 고통으로 인한 가정내 대표적인 살인사건을 보면 ① 아버지가 가정용 산소호흡기의 전원을 끈 뒤 희귀병 딸 사망사건(환자상태: 6년 전 경추탈골중증후군으로 전신마비, 살인동기: 의료비·전기세 부담, 사법처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3년), ② 아버지가 아들의 인공호흡기 제거해 사망(환자상태: 유전성 희귀난치병으로 20년간 투병, 살인동기: 환자 고통·수발 부담, 사법처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③ 70대 남편이 치매에 걸린 아내 목 졸라 숨지게 함(환자상태: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져 중증으로 악화, 살인동기: 아내의 폭언, 사법처리: 징역 2년 6월), ④ 아들이 뇌종양 딸기 아버지 목 졸라 숨지게 함(환자상태 : 2013년 1월 암 진단 혼수상태 후

의식 회복, 살인 동기: 환자 고통 경감·의료비 등 부담, 아들 구속, 재판 진행 중), ⑤ 아버지가 집에 불 질러 아들과 동반 자살(환자상태: 25년 전 교통사고로 뇌 다쳐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 살인동기: 환자 수발 부담, 사법처리: 당사자 모두 사망).

3. 간병범죄의 원인

간병범죄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경제적 부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자를 제대로 돌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더욱 그렇다. 환자를 간병하던 자식이나 배우자가 환자와 동반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에서 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때문일 것이다. 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이 덜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환자 급증과 함께 유사 사건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든가 가부장주의 등 한국 특유의 가족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리거나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 또는 동반자살하는 것이 그렇다. 경제문제를 비롯한 모든 책임을 가장(家長)이 진다는 그릇된 가족주의를 벗어던지고 구성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고 서로 소통·협력하는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Ⅲ. 간병범죄의 대책

간병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① 사회안전망 마련- 보호자 없는 병실 등 포괄 간호 확대, ② 가부장적 가정(가족) 문화의 병폐를 막는 의식의 변화라고 본다. 특히 식물인간이나 중증환자를 가정에서 돌볼 게 아니라 사회가 맡아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가족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실 등 포괄 간호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이 덜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환자 급증과 함께 간병범죄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치매환자 관리를 가족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프랑스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참고 문헌 ■

- [1] 이철호, “존속살해 범죄와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의 위헌성 검토”,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2호, pp.213-240, 2012.
- [2]金子勇, 高齢社會, 講談社, 日本, 1995
- [3] 히라야마 료, 子息介護の時代, 光文社, 日本, 2014
- [4] 손홍인譯, 공적개호보험 논의, 나눔의 집, 한국, 2008
- [5] 한국 사회의 현실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교적(儒教的)인 형식주의의 도덕이며 봉건적인 권위주

의(權威主義)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의리, 인정, 체면, 형식 등에 치우치고 본건적인 의식, 가부장제의 가족주의관이나 학벌, 파벌, 또는 서열 등으로 나타나는 虛妄의 권위주의에 의하여 개인은 사회의 모든 곳에서 여러 가지로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지금까지의 어느 권력자나 위정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기존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거나 정권의 유지에 위협시될 때에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그 자체를 서슴지 않고 부정하기가 일쑤였던 것이다(홍시중, 『한국지성의 고향』, 探究堂, 1966, 18-19면 참조).